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용산예술교육센터  
사용료 면제 동의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## 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1780호
-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제출일자 : 2020년 8월 12일
- 회부일자 : 2020년 8월 21일

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용산예술교육센터를 출연기관인 (재)서울문화재단이 전담 관리·운영함에 있어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의거,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

- 소 재 지 : 용산구 한강로 3가 63-70
- 사 용 자 : (재)서울문화재단
- 사용허가 면적 : 토지 409.58 $m^2$ , 건물 연면적 4,026.24 $m^2$
- 사용허가 기간 : 2020. 9. 11. ~ 2023. 9. 10.(3년)

#### 나.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

- ‘용산예술교육센터’는 디지털, 융·복합 등 미래수요에 맞춘 아동·청소년 특화 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문화예술활동, 예술교육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市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의 고유사무로 운영할 예정
- 이는 서울문화재단 고유사무 수행에 따른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 상 면제요건에 충족하며,
- 유상사용 허가의 경우, 문화본부 세출(사용료 관련 출연금 편성)·세입(사용료 징수) 예산 간 상계가 반복되며 사용료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(국세) 지출이 발생하므로 사용료 면제가 타당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2020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(’20.7.16.)
  - 심의근거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6조제2항제3호
  - 심의결과 : ‘적정’ (공유재산 사용료 면제)

## 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개관예정으로 서울문화재단의 고유사무로 운영하고자 하는 '용산예술교육센터'의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.
- 용산예술교육센터는 시장 요청사항('17.8.21.)에 따라 디지털, 융·복합 등 미래수요에 맞춘 아동·청소년 특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임.

### — 시장요청사항 ('17.8.21) —

서서울예술교육센터 등과 같이 맞벌이 가정 자녀(저소득층 포함) 대상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센터를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<용산예술교육센터 공간 사용계획>

주요 공간		면 적	주요 용도
F동	컨시어지(1층)	992.18㎡ (중층구조)	환대의 공간, 프로그램 소개 등
	라이브러리(1.5층)		라이브러리 기능 서가 구성
G동	스튜디오1(5층)	916.74㎡	예술교육 LAB, 열린 작업실, 워크숍 및 프로그램 운영
	스튜디오2(6층)	992.㎡	다목적 홀(워크숍 및 프로젝트 진행), 사무실

- 문화본부는 용산예술교육센터 운영·관리를 서울문화재단의 고유사무로 이관 후 건물과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문화본부 세출(사용료 관련 출연금 편성)·세입(사용료 징수) 예산 간 상계가 반복되고, 사용료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(국세) 지출부담 등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제5항제2의2호1)의 경우 2017.7.12. 개정되어 최근에 설립된 ‘청년예술청(제293회 임시회 가결, 2020.4.29.)’은 사용료를 면제받고 있는 중이며,
- 향후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시소유 총 7개 시설(남산창작센터, 금천예술공장, 문래예술공장, 서울무용센터, 연희문학창작촌, 서서울예술교육센터, 서울연극센터) 역시 2021년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추진할 예정이다.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출연기관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며,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인 바,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기간을 3년으로 함은 법령의 규정 내에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---

1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(사용료 감면)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"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
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